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8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時 : 1994年 12月 6日(火) 14時17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場

議事日程 (第1次 豫決特委)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3.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4.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案件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_____ 2 面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朱泰元)當選人事 _____ 3 面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_____ 4 面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金樂雲)當選人事 _____ 4 面
5.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_____ 4 面
6.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_____ 4 面

(14時17分 開議)

○ 議事係長 威京鎬 : 의사계장 함경호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위원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오늘 전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 예산안이 14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다음, '93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시작으로 하여 12월 19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상훈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薰 : 이상훈 위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있는 본위원회는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14時18分)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장에 선임코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文春 委員 : 곽문춘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주태원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薰 : 지금 곽문춘위원님께서 주태원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태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주태원 위원님께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석교대)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朱泰元)

當選人事

(14時20分)

○ 委員長 朱泰元 :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위원에게 이번으로 네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93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예산안을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되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기간내 원만한 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14時22分)

○ 委員長 朱泰元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文春 委員 : 곽문춘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김낙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 委員長 朱泰元 : 지금 곽문춘 위원님께서 김낙운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낙운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김낙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낙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金樂雲)當選人事

(14時23分)

○ 金樂雲 委員 : 김낙운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에게 감사드립니다.

주태원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이번예산결산에 관한 여러가지 안건들을 진술하고 심도있게 협의하면서 이끌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朱泰元 : 김낙운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6.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14時24分)

○ 委員長 朱泰元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199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제 4항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 재무과장 이영덕입니다.

1993년 평창군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자료에 의거 결산승인을 받기 위함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괄부문에 있어 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중 회계총예산액은 579억9,570만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85억1,162만4천원

으로 101%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03억2,745만9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1억8,416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75억3,898만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2억4,691만7천원으로 90%에 달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07억5,81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4억8,875만7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8개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04억5,671만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2억6,470만7천원으로 108%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5억6,929만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9,540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79억9,570만4천원이며 정수결정액은 597만7,192만3천원으로 103%입니다.

수납액은 585억1,162만4천원이며 미납액은 12억6,029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75억3,898만7천원이며 정수결정액은 480억7,895만1천원으로 101%입니다. 수납액은 472억4,691

만7천원이며 미납액은 8억3,203만4천원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8개특별회계 예산액은
104억5,671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억9,297만2천원으로 112%입니다.

수납액은 112억6,470만7천원이며 미수
납액은 4억2,8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79
억 9,570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503억
2,745만9천원으로 80%이고 이월액은
72억9,732만원이며 불용액은 53억3,250
만2천원이고 예산현액은 629억5,728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75억3,898만7천원이
며 지출액은 407억5,816만원으로 80%입
니다.

이월액은 64억3,590만9천원이며 불용액
은 37억8,280만9천원이고 예산현액은
508억7,687만8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8개특별회계 총예산액

은 104억5,671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95
억6,929만9천원으로 79%이고 이월액은
9억6,141만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5억4,969만3천원이고 예산현
액은 120억8,040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 총잉여금은 81
억8,416만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건에 13억206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은
62건에 59억9,525만1천원이고 계속비는
없고 보조금 잔액은 1억4,994만1천원이
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3,6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64억8,875만7천원이
며 이중 명시이월이 13억206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은 60건에 50억3,384만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1억4,470만8천원이고 순
세계잉여금은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총16억9,540만8천원
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2건에 9억6,141만

1천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없으며 계속비가 없고 보조금잔액이 523만3천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2,8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별첨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93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93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걸쳐 광문춘 대표검사위원과 김종득, 안영실 위원등 3명이 별첨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와 같이 25개항이 지적되어 해당실과소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朱泰元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高稔植 : 기획실장 고창식입니다.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측할수 없는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지출은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비비예산액이 2억7,376만2천원, 그중 1억4,463만3천원이 지출되는데 여기서 청소관리 기본경상비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976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산관리 주요사업비로 벼물바구미 농약대지원이 714만4천원과 그리고 호우피해 영농자재대 지원으로 163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삭도열병방제 지원금과 벼냉해피해 농약대로 2,415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

관리 주요사업비는 지방도및 군도 수로
원 퇴직금으로 1,032만8천원이 지출되었
고 7월호우피해와 태풍 로빈으로 인한
응급복구비는 재해대책 주요사업비로
3,640만8천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리고
물자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청소차량 손해
배상금 5,523만1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지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朱泰元 : 기획실장님 수고 하
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곽문춘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文春 委員 : 곽문춘 위원입니다.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의견서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1993년

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결과 그 의견서를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실시개요를 말씀 드리면
검사기간은 1994년 8월 1일부터 8월 20
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시방법은
지방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일반적 검사
로 결산관련중방, 장부, 과목별 계수상
호대조 계산검정, 합법성, 합목적성, 효
율성을 검토 하였고,

실시대상은 군본청 2개사업소, 8개읍면
을 실시하였으며 검사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명시이월비결산, 사고이월비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중점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검사
결과 대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79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5
억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29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3억2,70
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억 8,400만
원이고 이중에는 명시이월 13억 200만원

사고이월 59억9,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억 3,700만원으로서 잉여율은 1.3%로 과거 3개년 평균7.3%에 크게 미달하게 되며 또한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있어 경제정책에 따른 현실적 적용이 미흡하여 공유재산매각의 부진으로 40여억원의 세입결합을 초래하는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증 원만한 결산을 기하기 위해 44.3%에 해당하는 10억9,700만원의 불용액을 과오납 환수하는등 93년 하반기 기간중 재정운영상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였으나, 최종결산단계에서 적자결산 모면책으로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변칙적으로 과오납 반납조치한것은 합법적 절차의 결여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밖에 예산운용과 절감현황, 지방세입현황, 예비비지출현황등 결산검사를 통

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된것으로 인정되어 지적한 사례는 총25건으로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朱泰元 : 곽문춘 위원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교선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辛敎善 : 전문위원 신교선입니다.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련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먼저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은 579억9,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29만 5,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97억7,200만원중 수납액은 585억1,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은 579억9,600만원, 예산현액은 629억5,700만원으로서 이중 503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9,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5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처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계잉여금 총괄은 81억8,400만원이며 이중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13억200만원 사고이월이 59억9,500만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6건에 9,200만원이 전용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사항이 없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7건 168억7,300만원에서 지출액은 83억8,800만원이며 그중 이월액이 72억9,700만원, 불용액이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93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를 위해서 3억3,500만원을 승인한이후 3억3,500만 원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했습니다. 상환조건은 94년 일시상환조건으로서 부담행위를 승인했던 결과입니다.

채권중감및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도말에 67억5,400만원이며 93년도에 발생한 5억3,600만원 소멸된것은 9억4,600만원이 되며 93년도 결산한것을 보면 6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1,000만원이 삭감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중감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0억9,400만원이 전년도말 현재이며 93년도에 발생한것이 21억9,500만원, 소멸된것이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말 현재는 135억100만원이 되며 전년도 대비를 해서는 14억700만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감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191억 1,700만원이 되며 93년도말 현재액은 193억1,900만원이 되며 전년대비해서 2억200만원이 늘어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포함해서 전년도 현재액은 5,000만원이고 당해년도 현재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4,500만원으로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각 세입종류별 세입내역을 분석한바에 의하면 지방세는 목표액 44억 8,400만원 대 징수액은 52억 9,000만원으로서 8.3%를 증액징수 하였고 중수분포는 주민세를 비롯한 전체 세입과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된 3억300만원은 결손처분없이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이는 채무자 재력 부족및 행방불명에 의한 채납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거 과감한 정리로 행정의 낭비를 예방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112억8,500만원중 93.5%에 해당하는 105억5,4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10억 8,300만원에 비하면 5억2,900만원이 미수납 되어있는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예산액 7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3회 추경시 10억원을 삭감한 68억 3,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6억 4,400만원으로서 세입결합 41억8,600만원이 발생한것은 송정택지분양부진으로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83억6,100만원과 보조금 117억 900만원은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총액 규모면에서 예산액보다 일부 미징수 되었으나 각 세입과목별 내역을 분석하면 지방세는 목표액 보

다 추가 정수되었고 세외수입중 일부 미수납액은 대부분 그 사유가 수공이 되는 사안이나 '93년도 세입결산은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정균형을 견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508억7,700만원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7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94년도 이월액 63억3,600만원을 차감하면 7.44%에 해당하는 37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92년도 불용액 3.8%보다 현저하게 높은것은 봉평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및 군도 확.포장 사업비 불용액처리등으로 '93 세입결함으로 오는 결산상의 적자를 예상한 계획적인 불용처리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대 결산액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800만원으로 잉여율은 0.014%로써 전년도 14억6,000만

원에 비해 크게 미달하게 되며

예산전용은 6개 과목에서 9,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모두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했고 동일항목내에서 과목변경 정정하여 사용한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한 전용사례는 없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채권및 채무증감내역, 공유재산증감및 기금현황은 이상을 지적할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3건에 1억4,5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대부분이 농작물 재해보상및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집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할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및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세출의 예측이 매년 반복되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2건

수로원 퇴직금 2건의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청소차량 손해보상금 5,500만원의 예비비지출은 진부면예산에서 종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이 사항은 예산에서 지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운용및 절감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800만원으로서 적자결산을 예상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변칙적으로 일반회계에 과오납 반납조치한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한 사례라고 볼수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억제등 탄력있는 예산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9억1,000만원을 절감 하였으며 그 결과는 적자예산에 충당하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 112억6,500만원중 지출액 95억6,9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9억6,1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억3,5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각회계별 예비비 잔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대별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사용은 없었으며 이월사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3건으로서 9억6,1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주요인으로 나타나 있어 이월사유가 명확치 않으며 군도 확.포장 사업등은 5년차 이월되어 6년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등 3개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계결산지수만 제시하고 세입의 각 과목별 결산을 하지않는 등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를 이행치 않은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결산검토를 하면서 전문위원의 소견을 간략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결산에 대한 예비검토제도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못하였다는점과 둘째로는 예산에 대한 투자계획과 결산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朱泰元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時55分 停會)

(15時15分 續開)

○ 委員長 朱泰元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까지 제안설명과 감사의견,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致玉 委員 : 이치욱 위원입니다.

예비비 5,523만1천원, 물자관리에 진부의 청소차량은 그때에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高稔植 : 그당시에 구상권을 청구를 할려고 했었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사람이 없는처지에서 별금을 500만원까지 물고 그사람 입장으로 봐서,

○ 李致玉 委員 : 누가 500만원을 물었습니까?

○ 企劃室長 高稔植 : 사고난 운전기사가.....,

○ 李致玉 委員 : 왜 500만원을 물었습니까?

○ 企劃室長 高稔植 : 별금입니다.

○ 李致玉 委員 :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이청소차량이 사고를 냈잖아요. 사람이 다쳤는지 죽었는지 그랬지요?

○ 企劃室長 高昶植 : 예가 죽었지요.

○ 李致玉 委員 : 그래가지고 이 차량이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일반보험이 안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高昶植 : 책임보험만 가입되고 일반보험이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러면 이차가 당초에는 가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 企劃室長 高昶植 : 그 분기에 해당되는 보험을 면에서 줘,

○ 李致玉 委員 : 아니 보험이 6개월마다 하는수도 있고 1년마다 하잖아요?

○ 企劃室長 高昶植 : 보험금이 예산상 조치는 되어 있어서 그당시에 총무계장이 담당계장들이 보험을 챙겨야 되는데 보험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 까지 있었고,

○ 李致玉 委員 : 아니 그러니까 일이 그렇잖아요. 일반 개인집에서 개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이나 일반보험날짜가 도래되면 그것을 체크를 했다가 끝나는날 그다음날 불입을 하는데 아니 기관이라

는 곳이 도대체 차량보험 끝나는 것을 몰랐다면.....,

○ 企劃室長 高昶植 : 그당시에 많이 잘못된거지요.

○ 李致玉 委員 :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5,500만원인지 금액은 모르고 몇1,000만원되는데 진부면 사무소에서 면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분할을 해서 분담을 하느니 그런얘기가 있었는데 5,523만 1천원이라는 돈을 그냥 예비비에서 똑 잘라 주었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네요. 그런데 보험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있다가 된것입니까?

○ 企劃室長 高昶植 : 이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차량이 사고가 난것은 91년 10월 22일자로 났습니다. 그날짜에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91년 11월 3일날 났는데 11월 3일날 그제서야 면사무소에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서,

○ 李致玉 委員 : 그러니까 사고난날로부터 거꾸로 쳐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날짜가,

○ 企劃室長 高昶植 : 11일간 안들어 갔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인사조치만 하고 말았습니까?

○ 企劃室長 高昶植 : 그래서 종합보험이 가입안된 상태에서 소송이 강릉지원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국가가 공무원이 확실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서 사고를 냈을때는 단 원호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또는 강원도 법무당국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 사건은 구상권 행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와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진부면이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企劃室長 高昶植 : 그당시에 정계를 준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했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냥 계장이나 또 책임자나 아무애기도 없이 필요한 5,523만 1천원을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만 하고 말았군요. 이것은 다시 거론이 되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 朱泰元 委員 : 조금전에 이치욱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해당면에 예산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그 예산이 영달이 안됨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못했다는 얘기가요? 예산이 영달이 되었는데 해당면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보험가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느쪽입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 예산조치도 되고 자금영달도 되었는데 면에서 보험가입을 책임보험만 들었고 종합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 朱泰元 委員 : 그렇다면 조금전에 엄격한 과오를 범했을때 구상권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미 다 영
달이 되고 또 책임보험가입을 하면서 까
지도 종합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는 것은
하나의 고의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것이 고의가 아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했다면 모르
겠는데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면서 종합
보험은 가입을 안한다는것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 企劃室長 高稔植 : 제가 알고 있기로
는 당시에 총무계장이 인사이드가 있
어서 다시은 총무계장이 모르고 안한것
으로 알고 있는데,

○ 朱泰元 委員 : 책임보험 가입은 누가
했습니까?

책임보험기간이나 종합보험기간이나 1년
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 財務課長 李永德 : 지금 책임보험하
고 종합보험하고 기간이 좀 다른것이
책임보험은 차를 등록할때 즉시 책임보
험을 들고 그다음 종합보험은 그후에 별

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하고 종합보험하고 날짜가 조금 상이합
니다.

○ 朱泰元 委員 : 상이하더라도 당초의
예산을 년초에 보험료를 책임보험료던
종합보험료던 군에서 면으로 예산배정해
서 영달하면 굳이 예산배정 받은 그 범
위내에서 책임보험료를 6개월씩 잘라서
할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치해놓고 예치할 이자가 얼마나 느는
지는 모르겠으나 할이유가 없는데 1년간
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6개월 해놓고 6개월후에 다시한다고 하
면서 안하고 그간에 영달된 예산은 다른
곳에 유용을 했던지 하는 과정에서 결과
적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
느냐,

○ 企劃室長 高稔植 : 그 이전에는 책임
보험제도가 2년에 한번씩 책임보험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종합보험하고 기간이 같아져서
그렇게 되는데 당시에는 법적인 제도
가 책임보험을 2년에 한번씩 물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실지 이 보험일자하고
맞출수 없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리고 고문번호사가
구상권을 할수 없다라는 어떤 통보의
문서가 왔지요? 그것을 지금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 끝에 실음)

○ 李致玉 委員 : 이치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세입결산란이 있
는데 여기에 미수총액이 11억6,000만원
인데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1,986만원
이 미정수 되었다고 그러는데 보통 상수
도 요금은 잘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떻게 미납금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 상수도요금을 매
월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공가라던가 이
사들간 분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몇년간 누적되어 이렇게 되었고 또 결산
당시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후에 좀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래서 한읍면에 평균
2백3-40만원씩 미납되었다는 얘긴데 어
떤면이 제일 많습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 읍면별 내역은 지
금 없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이 상수도 요금은 얼
마 안되기 때문에 다 잘내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누적되어 계속넘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 그래서 상수도요
금 안낸곳은 단수조치를 해서 받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일반회계에 8억3,200
만원이라는 돈은 세금이겠지요?
세금도 이렇게 많습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 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경매를 해서 금년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농공지구조성 1,638만
1천원이라는것은 이것도 설명해 보십시
요. 이것은 부과한것인지요?

○ 財務課長 李永德 : 아니 부과한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들 하면서
저희가 개인들한테 용자를 해준것이 있
습니다. 용자해준것을 받는데 용자금

이 회수가 안되어서.....,

○ 李致玉 委員 : 그러니 회사가 다 망해서 팔팔이 헤어지고 없잖아요?

○ 財務課長 李永德 : 망해서 간사람은 그렇지만 그외의 것은 계속 받고 있고 또 망해서 간것도 나중에 다시 후임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후임업체에게 땅은 있으니까 땅에 대한것이기에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업체만 잘 가동이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알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주태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봉평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7억, 군도확포장사업에서 4억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사업은 근본적으로 불용액 처리할 사업이 아니지요?

○ 財務課長 李永德 : 네, 그렇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불용액 처리한 경위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 봉평 도읍정비사업은 당초의 총사업비가 44억원이 소요되는데 93년도에 16억원을 사업비로 계

상했으며 사업비 대부분은 보상금으로 지장물및 토지에 대하여 감정에 의한 보상 등은 대상자에게 선금급으로 70%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철거또는 등기이전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30% 지급함으로써 총 보상비는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중에 집행잔액 6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당시에 지장물및 토지물건이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원인행위가 되었다면 당연히 사고이월을 했겠지만 원인행위가 되지 않음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음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봉평도읍정비 사업은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과 추경예산에 8억4,000만원등 1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에 원활을 도모했으며 지금까지 총 25억원등 투자하였고, 95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원과 수정 또는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 사업비등

향후소요액 19억을 확보할 계획으로서 내년도에 모든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렇다면 이것이 보상금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비를 당사자들이 안 찾아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년도에도 보상을 받드시 해서 이사업을 마무리해야될 사업이지요.

중도에서 잘 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사업을 안할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을 할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또 보상금으로 지급이 안되서 예산잔액이 남는다라고 하게되면 그것이 이미 예측이 되었던 겁니다. 년도말까지 가기 이전에 사업중간에서 예측이 되어서 그외에 포장사업을 한다던지, 상수도 사업을 한다던지, 하수도 사업을 한다던지 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익년도에 다시 그것을 충족을 시키자니까 예산상에 봉평도읍사업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거지요. 또 밀쳐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들으면 95년도에 마무리를 한다는것이 95년도 예산에 6억밖에 상정이 안되었지요? 앞으로 심의를 할겁니다만, 나머지 14억은 어디서 보충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당초 이 예산이 이월이 되가지고 94년도에 같이 해나갔다고 하면 95년도에 예정대로 마무리 하는데 별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봉평도읍정비의 사업은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미 예산이 확보된 예산까지도 결산에 흡입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다, 또 반면에 같은 포장사업을 4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추경에서 다시 4억원은 포장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도읍정비 사업은 안할것인가 말입니다. 시작을 해놓고 꼭해야할 사업인데 이것은 여타의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사업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하고 꼭 마

무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산문제가 어렵도록 만드는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라던지 대책이 있는지요?

○ 企劃室長 高昶植 :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할때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이런 기본방침하에 일단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아까 저희들의 행정적인 착오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도 판단이 이것이 어떤 원인행위가 되었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그당시 판단이 원인행위가 되지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생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주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평도읍정비 사업이 93년도에 추진이 저희생각에서는 원활치 못했다고 봅니다. 그이후에 주위원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아가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동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꼭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알았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김낙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진부면에서 있었던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 가입을 하다가도 말료된 다음날 바로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다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인데,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이유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충분치 못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기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개면에 면행정을 책임지는 면장님이 계신데 그 면장님이 결국은 행정통제나 행정을 제대로 이끌지못한 그런결과가 아니겠느냐, 사실 면장님께서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것은 실무자 계장이 이동중이었다하던 어떤 이유든 이유가 되

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을 책임지는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면장님이 변제를 하던지 아니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변제를 하던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하는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봐주는 것은 좋지만 예비비에서 그러한 그 사고발생한 처리금액을 집행했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결산심의에서 예비비지출에 대한것은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지급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본인들한테 변제를 서키던지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의회가 개원된것이 91년 4월입니다. 91년 이전부터도 있었습디만, 91년 이후에 계속해서 군도확포장 사업을 시행을 했고 처음에는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행령 104조 1항 1호

에 의해서 작업상에 혼잡등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군도확포장 공사가 4개구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구간에 빠르게는 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공사를 계속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하안미 가평에서 백옥포간 군도는 89년도부터 계속해서 올해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구간은 한두번씩 빠진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총 투자된 사업비가 대략 10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4개구간에 10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한경쟁을한 첫해 내지는 2년차까지 약 22억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그이후에 경쟁입찰을 할수 있도록 된이후에 투자된것이 약 76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드시 시행령 104조 1항 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낙찰율을 보면 많기는 99.87%, 그리고 94년도에는 83%도 있고 88%도 있고 90%도

있는데 지난해 93년도까지는 계속 95% 이상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 낙찰율이 올해를 빼고 약 95% 이상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했을때는 약 8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입찰율이 약 10%정도 비싸게 계속 낙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한경쟁한 금액 22억을 뺀 76억에 대한 10%정도를 계산하면 7-8억정도가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 수의계약한 원인이 해당되는 지구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지구도 있습니다. 워낙 거리가 떨어져 양쪽에서 같이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작업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상에 약 7.8억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하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수의계약의 조건이 확실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겠고 남은 예산을 갖다가 더 사업을 확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무책임한 입찰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은 없도록 재무과나 주요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중에 하나 잘못된것이 있다고 하면 109조에 보면 제1차공사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럼 당초에 제한경쟁을 했을때는 낙찰율보다 높게 써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속사상전부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보면 91년도에 제한경쟁을 해서 99.35%로 낙찰이 되었는데, 92년도에는 99.87%로 전해 낙찰금액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인정하시지요?

○ 財務課長 李永德 : 네.

○ 金樂雲 委員 :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리 지난일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시한번 짚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100억이 가까운 예산에 투자되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계속 100% 가까운 그런 낙찰을 계속 준겁니다. 업자들은 좋겠지요. 많은 예산을 주니

가 공사하고 남는 이익도 많겠고 좋겠습니까만, 군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7.8억이면 얼마나 많은 구간을 더포장할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예산운영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기획실장님께서서는 진부에 5,500만원인가 예비비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 재무과장입니다.

김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요즈음 입찰을 하면 대개 85% 직상으로 낙찰되는것이 거의 다입니다. 특히 토목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 같은것은 90% 이렇게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상에 85% 라는 것은 회사가 이익을 한푼도 안먹고 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금액이 바로 8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85%를 뺐을때 그 회사가 이익을 안먹고 일을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졌으니까 공사가 더 잘되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군비를 지금 보면 85%직상구매되면 상당히 7.8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지만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하고 경리계장하고 수의계약을 안해줄려고 현지를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고 현장사무실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안해주고 입찰을 했을때는 작업상에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대신 수의계약은 해주되 직상인 85%와 전에 낙찰가 금액하고 중간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왜 그렇게 굳이 깎아서 해주면 공사가 잘안되냐는 항의도 받았습시다만, 군도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안하고 전부다 입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高稔植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건당시에 상당히 애가 어린아이였던가 봅니다.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다가 뒷바퀴에 부딪쳐서 애가 죽었고 그것을 운전기사가 운전기술이 능숙하지 못하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도 착안이 되고 꼭문춘 위원님께서도 와계시지만 진부에서 그사람 평생의 운전기사로서 상당히 열심히 일해온 모범적인 이런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범상 조치를 해야지 타당하겠습시다만, 하나의 같은 동료로서 또 그동안 그사람의 모든 인격면에서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에끌려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애갑시다만 여러가지가 고려가 되가지고 실제 국민이낸 세금을 갖다가 보상을 해줬다 해서 상당히 그런데 지금 그당시의

면장은 전찬수 면장이고 지금있는 공무원에게 변제를 한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단에서 얼마 보수도 안되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우리 평창군민의 한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그이후에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이것은 법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가 포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 金樂雲 委員 : 글쎄요.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관리책임자가 사람이 필요로 해서 고용했을때는 그사람들이 만약에 사고를 났을때를 대비한 보험금까지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것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서 생긴일입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떠나서 행정책임자인 면장이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이런것을 그냥넘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생긴다고 했을때 계속 군에서 대줄거나 말입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 김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이 타당성이 있는 애깁니다. 이것은 인사조치를 했어야지 바람직한 얘기라고 저도 전제를 하면서 제심정 같아서는 일단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평창군의 자동차 보험은 철저히 운영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교훈으로 여기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좀더 분발을 해서 나가겠다는 마음의 각오입니다.

널리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 朱泰元 委員 : 주태원 위원입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2건하고 수로원 사망퇴직금 이런 사항이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요청이 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을수가 있는 것인데 예상된 비용인데 이것을 왜 퇴직금이라던가 적립금이라던가 이런것을 예산승인을 받지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됩니까?

○ 企劃室長 高昶植 : 이것은 잘못된겁

니다.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한두번 들은애기고 해서 95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朱泰元 委員 : 이것을 예산에 계상할 줄 몰라서 안한것은 아닐것이고 어떤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 하십시오.

○ 企劃室長 高昶植 : 제가 조금전에 예산심의를 담당한,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다수가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의 조그만 애로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예측을 할수 없었다 하는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감도 고려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쨌든 예측이든 계상을 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역으로 생각을 하면 군산하에 600여 공직자가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이러한 사람들은 제일 굳은일 하고 또 남에게 인정도 못받는 사람들인데 이사람들 퇴직금여러

던가 이런것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것은 평상시에 관리하는 과장님들이나 군수 산하에서 이사람들이 특별히 생각을 달리 해줘야 할 사람들인데 소홀히 했다는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그늘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던가 이런것도 개선할 생각을 함께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委員長 朱泰元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영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9分 停會)

(16時57分 續開)

○ 委員長 朱泰元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잠시전까지 심사를 마친 2건의 의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종합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합의됨에 따라 의사일정 3항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견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안가결과 관련하여 두분 실과장님께 다음사항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93결산및 예비비 지출중 일반회계 결산의 군도확포장사업의 수의 계약건과 결산을 위한 계속사업비를 불

용액 처리한 문제, 그리고 예비비지출에서 진부 청소차사고와 관련한 지출건,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은 사전 예측되는 사항을 태만한 사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예산결산안 심사전에 예비검토가 반드시 정착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 재무과장입니다. 군도계속사업에서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더군다나 높은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수의계약을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시에는 직공비에서 가깝게 수의계약을 해서 경쟁과 같은 그런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도 예비검토제를 도입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 기획실장입니다. 예비비지출과정에서 진부 청소차 운전기사 손해배상 관계하고 환경미화원 퇴직

금에 관계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관계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충고와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해서 이미 시정을 하고 있고 진부청소차 같은 사례는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朱泰元 :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
다.

(17時04分 散會)

○ 出席委員

委員長	朱泰元
幹事	金樂雲
委員	李致玉
委員	李相燾
委員	朴容泰
委員	郭文春
委員	金鍾永

○ 委員아닌 議員

議長 韓榮一

○ 出席公務員

企劃室長	高昶植
財務課長	李永德
社會課長	姜慶錫
都市課長	金敏洙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權赫昇
議事係長	咸京鎬

【 議 席 】

○ 議席表 (95面에 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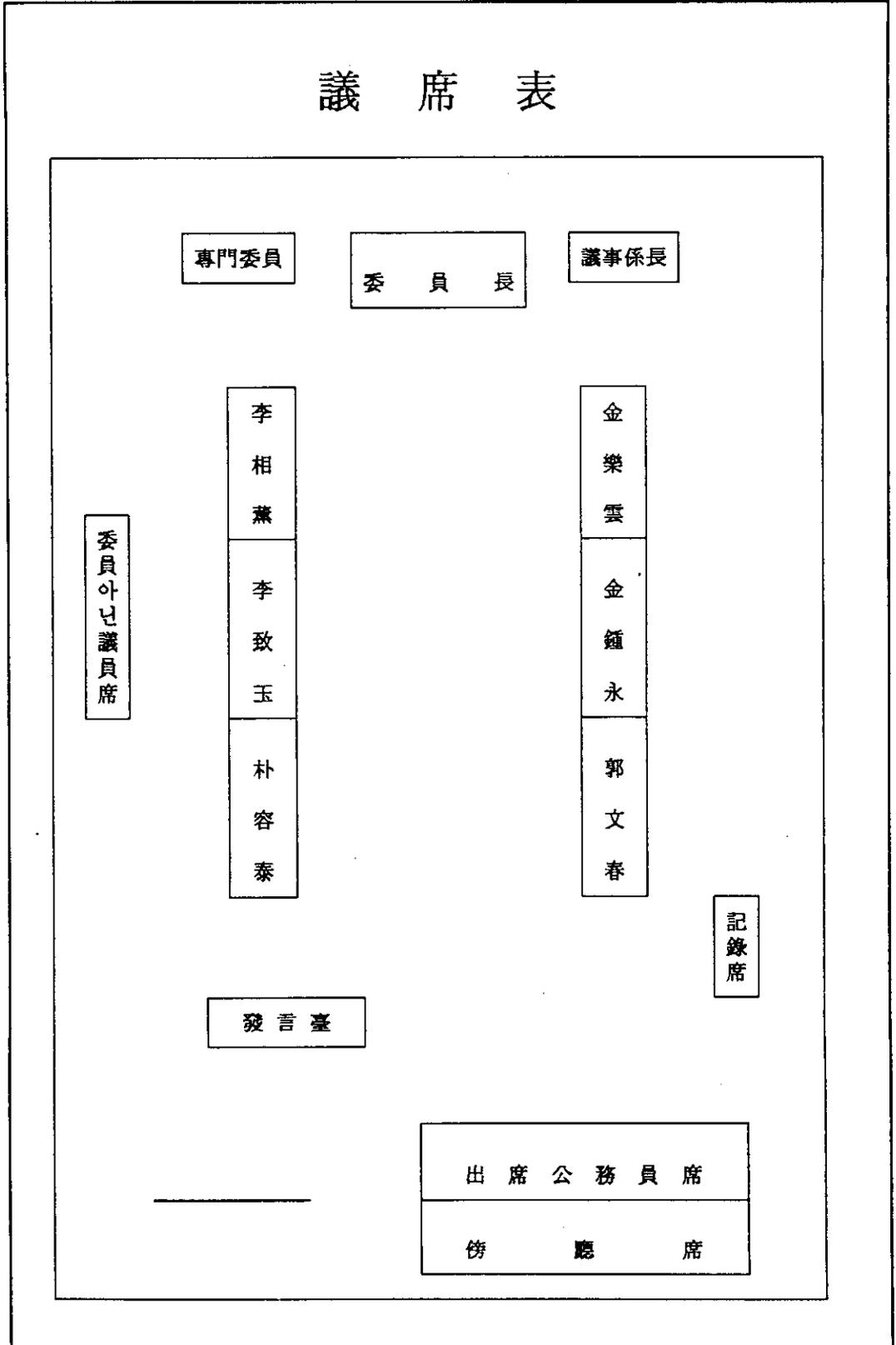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依據 署名捺印함.

1994年 12月 日

委員長 朱泰元 

專門委員 辛教善 

議 席 表



질의 · 서면답변서

질의	주태원 의원	답변	평창군수 (기획실장)
회의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결위원회('94.12. 6)		
<p><질의요지></p> <p>진부 자동차(청소차) 사고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통보 문서사본</p>			

<답변>

통보문서 사본 따로붙임.

변 호 사 김 용 학 법률사무소

(374 - 0330)



1993 . 9 . 9

문서번호 : 93 - 901
 수 신 : 평창군수
 주 무 : 기획관리실장
 제 목 :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회신

선 결	부 큰 수	4/10	
발주일자	발주처	5574	실장
처리과	구상권		계장

1. 귀 군청 소속 공무원 김재복이 '92. 11. 3. 10:50경 귀 군청소유 강원 7나 7266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하진부 6리 4반 소재 도로상에서 쓰레기수거 작업도중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진로상에 피해자 방호빈이 있는것을 발견치 못하고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왼쪽 앞바퀴로 머리를 깔고지나가 피해자를 사망케한 사실이 있고, 위 사고시 위 김재복은 차량 출발전 차에서 내려 전방에 있는 장애물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위 과실이 국가배상법 제 2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화물청소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 역시 이건 사고시까지 위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업무태만사실은 인정되나, 위 업무태만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제 2조 소정의 구상권을 행사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따라서 위 김재복이나, 보험가입관련 공무원들에게 대한 국가배상법 제 2조 소정의 구상권 행사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 -

변 호 사

김

용

학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關聯
檢 討 報 告 書

1. 所管

가.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나.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

2.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1994년 9월 30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6)

3. 決算및豫備費支出개요

가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 세입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정 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계	결 손 처 분	이 월
계	57,996	62,957	59,772	58,512	1,260	-	1,260
일반회계	47,539	50,877	48,079	47,247	832	-	832
특별회계	10,457	12,080	11,693	11,265	428	-	428

※ 특별회계(9): 상수도, 주택사업, 새마을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공유입야관리사업, 지방양여금특별회계

○ 세출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57,996	62,957	56,323	50,327	7,297	5,333
일반회계	47,539	50,877	45,792	40,758	6,336	3,783
특별회계	10,457	12,080	10,531	9,569	961	1,550

○ 결산상 잉여금처리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국 고 보 조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58,512	50,327	8,184	1,302	5,995	150	737
일반회계	47,247	40,758	6,489	1,302	5,034	145	8
특별회계	11,265	9,569	1,695		961	5	729

○ 예산전용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감 액		전 용 증 액	
		건 수	감 액	건 수	증 액
계	92	6	92	6	92
일 반 회 계	92	6	92	6	92

※ 특별회계 해당 없음

○ 차년도 이월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77	16,873	8,388	7,297	1,188
일반 회계	소 계	74	12,117	4,972	6,336	809
	명시이월	16	1,564	262	1,302	
	사고이월	58	10,553	4,710	5,034	809
특별 회계	소 계	3	4,756	3,416	961	379
	명시이월	-	-	-	-	-
	사고이월	3	4,756	3,416	961	379

○ 채무부담행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채무부담 승 인 액	채무부담 행 위 액	승인일자	상 환 조 건
계(1건)	335	335	'93.10.25	
93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335	335	'93.10.25	'94년도 일시상환

○ 채권증감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93년도		'93년도말	전년대비 증 감
		발 생	소 멸		
계	6,754	536	△ 946	6,344	△ 410
일반회계	55	29	-	84	29
특별회계	6,699	507	△ 946	6,260	△ 439

○ 채무증감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93년도		'93년도말	전년대비 증 감
		발 생	소 멸		
계	12,094	2,195	789	13,501	1,407
일반회계	1,699	335	126	1,908	209
특별회계	10,395	1,860	663	11,593	1,198

○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93년도		'93년도말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19,117	348	146	19,319	202
행정재산	10,510	348	45	10,813	303
보존재산	-	-	-	-	-
잡종재산	8,607	-	101	8,506	△ 101

○ 기금현황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현재액	증 감 액		당해년도 현재액
		수 납 액	지 출 액	
계	50	28	5	73
생활보호기금	10	1	-	11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금	40	27	5	62

나. 豫備費支出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계 (13건)	145	145	145		
환경미화원퇴직금	9	9	9		5.25
벼물바구미농약대지원	7	7	7		6.21
지방도.국도수로원 퇴직금	7	7	7		7.30
7월 호우피해복구비	9	9	9		7.30
호우피해영농자재대 지원	2	2	2		9.21
이삭도열병방제지원	4	4	4		9.21
벼냉해피해방지농약 대	11	11	11		9.21
태풍로빈피해응급복 비	27	27	27		9.21
청소차량손해배상금	55	55	55		10. 8
수로원사망퇴직금	4	4	4		10.27
환경미화원퇴직금	1	1	1		12.27
태풍로빈농자재지원	7	7	7		11.22
우박피해농가영농자 재지원	2	2	2		11.22

4. 檢討意見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각 세입 종류별 세입내역을 분석한바에 의하면

- 지방세는 목표액 44억8,400만원대 징수액은 52억9,000만원으로서 8.3%를 증액징수하였고 증수분포는 주민세를 비롯한 전체 세입 과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징수결정액중 미수납된 3억300만원은 결손처분이 없이 익년도로 이월 하였음.
이는 채무자 재력부족및 행방불명에 의한 체납중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거 과감한 정리로 행정의 낭비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12억8,500만원중 93.5%에 해당하는 105억5,4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10억8,300만원에 비하면 5억2,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당초예산액 7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3회 추경시 10억원을 삭감한 68억3,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6억4,400만원으로 세입결합 41억8,600만원이 발생한것은 송정택지분양부진으로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판단됨.
- 지방교부세 예산액 183억6,100만원과 보조금 117억900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음.

- 일반회계세입은 총액 규모면에서 예산액보다 일부 미징수되었으나, 각 세입과목별 내역을 분석하면 지방세는 목표액보다 추가징수되었고 세외수입중 일부 미수납액은 대부분 그사유가 수궁이 되는 사안이나 '93년도 세입결산은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정균형을 견지하지 못한 결과초래

나. 일반회계 세출부문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508억7,700 만원에 대하여 80%인 407억5,800만 원을 집행하고 94년도 이월액 63억3,600만 원을 차감하면 7.44%에 해당하는 37억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92년도 불용액 3.8%보다 현저하게 높은것은 붕평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및군도확.포장사업비 불용액처리등으로 '93세입결합에서 오는 결산상의 적자를 예상한 계획적인 불용처리임.

- 각 항목별 예산대 결산액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800만원으로 잉여율은0.014%로서 전년도 14억6,000만원(3.4%)에 비해 크게 미달하게 되며,
- 예산전용은 6개 과목에서 9,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모두가 지방재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전용 기준을 준수하였고 동일 항목내에서 과목경정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한 전용사례는 없었음.

-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채권및 채무중감 내역, 공유재산중감및 기금현황은 이상을 지적할 수 없었음.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부문

- 예비비는 총13건에 1억4,5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대부분이 농작물재해 보상및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등으로 예측하지못한 사태에 대한 집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34조및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토록 되어 있으므로 세출의 예측이 매년 반복되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2건 수로원 퇴직금 2건의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득하는것이 더 바람직 했을것으로 사료되며,
 - 청소차량 손해배상금 5,5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은 진부면 예산에서 종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라. 예산운용및 절감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00만원으로 적자 결산을 모면하고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변칙적으로 일반회계에 과오납 반납조치한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한 사례이며,
-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억제등 탄력있는 예산운영으로 9억1,000만원을 절감하였으나,결과는 적자예산에 충당하게됨.

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서
 - 세입결산액 112억6,500만원중 지출액 95억6,9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9억6,1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억3,5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각회계별 예비비 잔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대별됨
- 예비비 사용은 없음.
- 이월사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3건 9억6,100만원으로 공기부족이 주요인인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월 사유가 명확치 않으며 군도확.포장사업등은 5년차 이월되어 6년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계결산지수만 제시하고 세입의 각 과목별 결산을 하지 않는등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를 이행 하지 않았음.